

인천지방법원 2021. 10. 28 선고 2021가단249383 판결 [매매대금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10. 28.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. 5. 25. 선고 2011가단27572 매매대금등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을 확인한다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 문주희

별지